

# 기술의 발전과 납세자 권리 - 가상자산, NFT와 기부세제 -

토론자 : 권 형 기



2023. 4. 20.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학 박사

- (現) 조세전략포럼 부회장, 한국글로벌무역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법제이사, 한국조세법학회 법제이사, 한국지방세학회 교육이사
- (現) 로앤비 온주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집필위원
- (現)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센터 자문위원
- (現)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학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강사(법인세법)
- (現)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조세법총론, 법인세법, 관세법 등)
- (現)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대리 실무교육 강사(부가가치세),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강사(조세형법)
- (現)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체납처분 관리위원
- (現) 서울본부세관 법률고문, 관세청 외부 강사
- (現) 법무법인 평안 파트너 변호사(조세/기업자문부문 총괄팀장)

## 발제 내용의 요약

- 소득세 : 기부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영수증상 발행금액과 회계상 인식이 다른 문제
- 부가가치세 :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간주공급 과세가 결정됨
- 개별소비세 : 기부금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외국의 자선기관이나 국가 등에만 특례규정이 있음)
- 상속세 : 현물기부시 비과세규정 있으나, 사후관리 규정 있음
- 지방세 : 면제 규정이 있으나, 일정한 경우 추징 규정이 있음
-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영국과 일본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 시사점 :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하는 전제 하에 세금 면제 제도 要
- 문제점
  1. 시가변동에 따른 기부금액 산정의 어려움
  2. 기부시 수수료 발생의 문제
  3. 기부세제와 관련한 전반적 문제 등 제시

논의의 시작 - 가상자산의 구분 및 관련 세제에 관한 기초

-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
- 지급결제형 / 유틸리티형 / STO(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법률효과. 세법상으로 전혀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Ex) 부가가치세의 경우 - 지급결제형 : 과세대상 X. 유틸리티형 : 상품권 등과 유사하게 SPV, MPV 등 논의가 필요. STO : 원칙적으로 비과세. 단, 그 자체가 재화나 용역을 체화하고 있는 경우나 조세회피를 위한 STO의 경우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임(이 경우에도, 실물자산과 STO의 거래방향이 서로 다를 시 취급 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음)

- 특히 STO의 경우 기초자산이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경우, 취득세와 간주취득세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부동산인 경우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 등도 쟁점이 될 것임

- STO가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비단 명의신탁의 중여인제뿐만 아니라 항시 문제가 가능한 특수관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복잡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음

- NFT의 경우에도 STO에 해당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고,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도 가능한 상황임

## 발제자의 정책적 시사점 관련

1.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자산은 주식과 다른 자산으로 구분될 것이므로 제한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관하여

-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STO 발행시에는 문제 발생할 수 있음

2. 시가변동에 따른 기부금액 산정의 어려움

- 주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변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음. 가상자산이 현재 시가변동이 큰 자산이라고 하여 특례규정이 있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 다른 자산(예를 들어, 주식 등)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개별 특례규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변동이 크다는 사유만으로 특례규정 입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앞으로 주요 가상자산에 관한 변동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입화 등도 변동가능함)

3. 기부시 수수료 발생의 문제

- 이 부분은 과세당국의 투명한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가능할 수 있음. 단, 거래소 등과 협력하여 문제 해결 가능할 여지 있음

4. 기부세제와 관련한 전반적 문제

- 결국 ‘가상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예컨대, 세법상 투자계약증권(금융투자소득), 유틸리티 증권(상품권 유사), 지급결제형 증권(화폐와 유사) 등 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함